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김한규 · 김영진
박균택 · 양부남 · 장종태
임호선 · 조인철 · 박용갑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.

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,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·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‘에너지영재학교’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·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·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의2 등).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부설기관)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
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·운영)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(이하 “에너지영재학교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.

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·감독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한국에너지공대의”를 “한국에너지공대 및 에너지영재학교의”로, “교원인사위원회를”을 “각각 교원인사위원회를”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 등)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·교감 및 교사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강사 및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등의 자격, 근무조건, 임용 및 파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4조(정관)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11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부설기관) 한국에너지공</u> <u>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</u> <u>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</u> 제4조(정관) ①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</u>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9조의2(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</u> <u>· 운영) ① 한국에너지공대는</u> <u>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</u> <u>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</u> <u>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</u> <u>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</u> <u>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</u> <u>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</u> <u>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</u> <u>정 이하의 학교(이하 “에너지</u> <u>영재학교”라 한다)를 둘 수 있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</u>

제21조(교원인사위원회) ① 한국 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.

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·감독한다.

제21조(교원인사위원회) ① 한국 에너지공대 및 에너지영재학교의-----
-----각각 교원인사위원회를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 등)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·교감 및 교사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강사 및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임용권자는

해당 기관의 교원을 에너지영
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
원 등의 자격, 근무조건, 임용
및 파견 절차 등에 필요한 사
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
로 정한다.